

『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』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

의 변	안 호	
--------	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2. 12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1960~70년대의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가치가 국내·외로 재조명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
- 특히,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혁신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.
- 이에,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과 성과 등을 알리고 전시·체험·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,
-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새마을운동 테마공원	문화 공원	경상북도 구미시 상모, 사곡동 일원	-	245,697	245,697		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

－ 변경 사유서

도면 번호	공원명	결 정 내 용	결 정 사 유
①	새마을 운 동 테마공원	- 주제공원(문화공원)신설 - 공원명 :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- 시설세분 : 주제공원 ⇒ 문화공원 - 면적 : 245,697㎡	-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대 국민정신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,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성과 등을 알리고 전시·체험·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함.

3. 관련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- ⑤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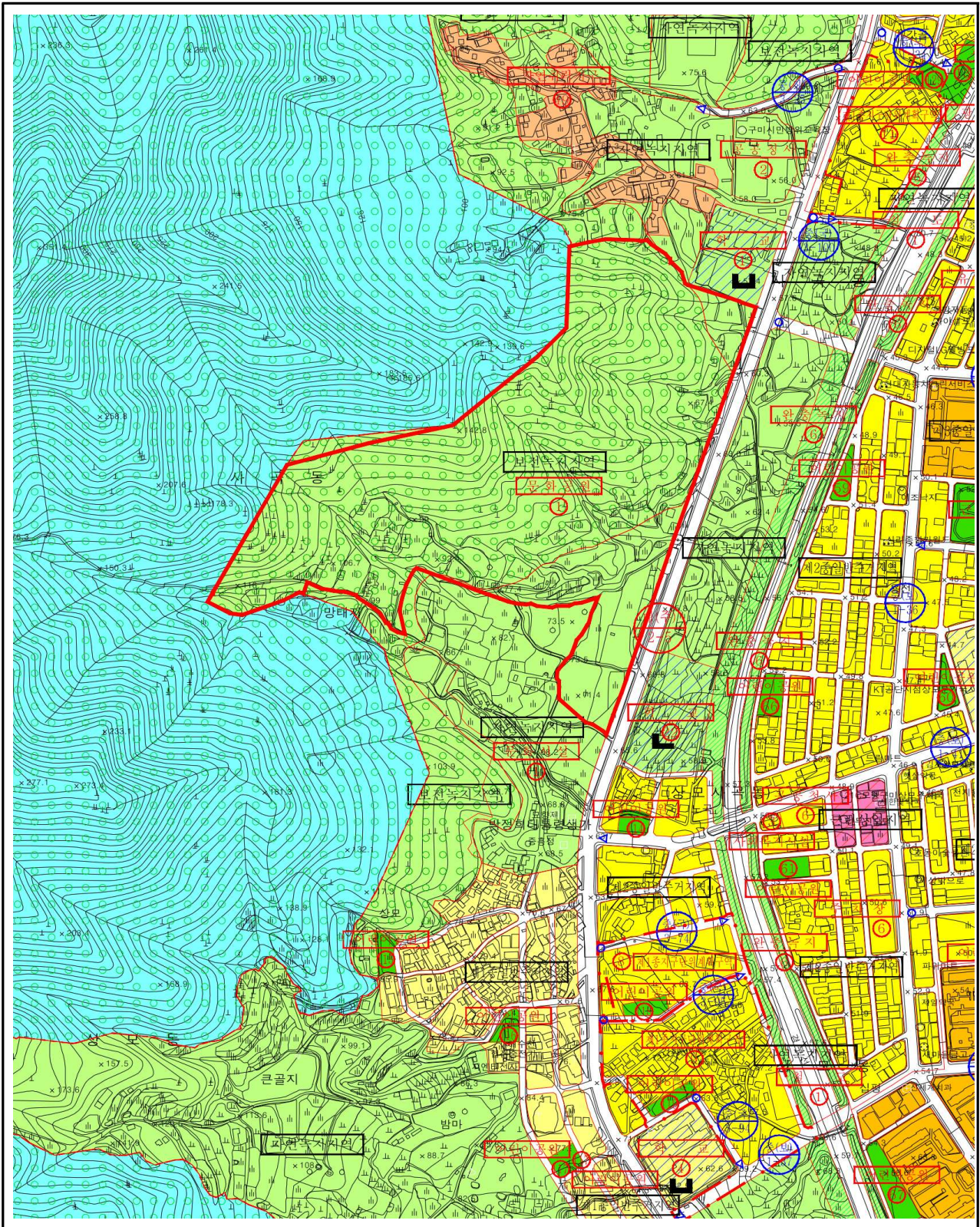
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 법 제28조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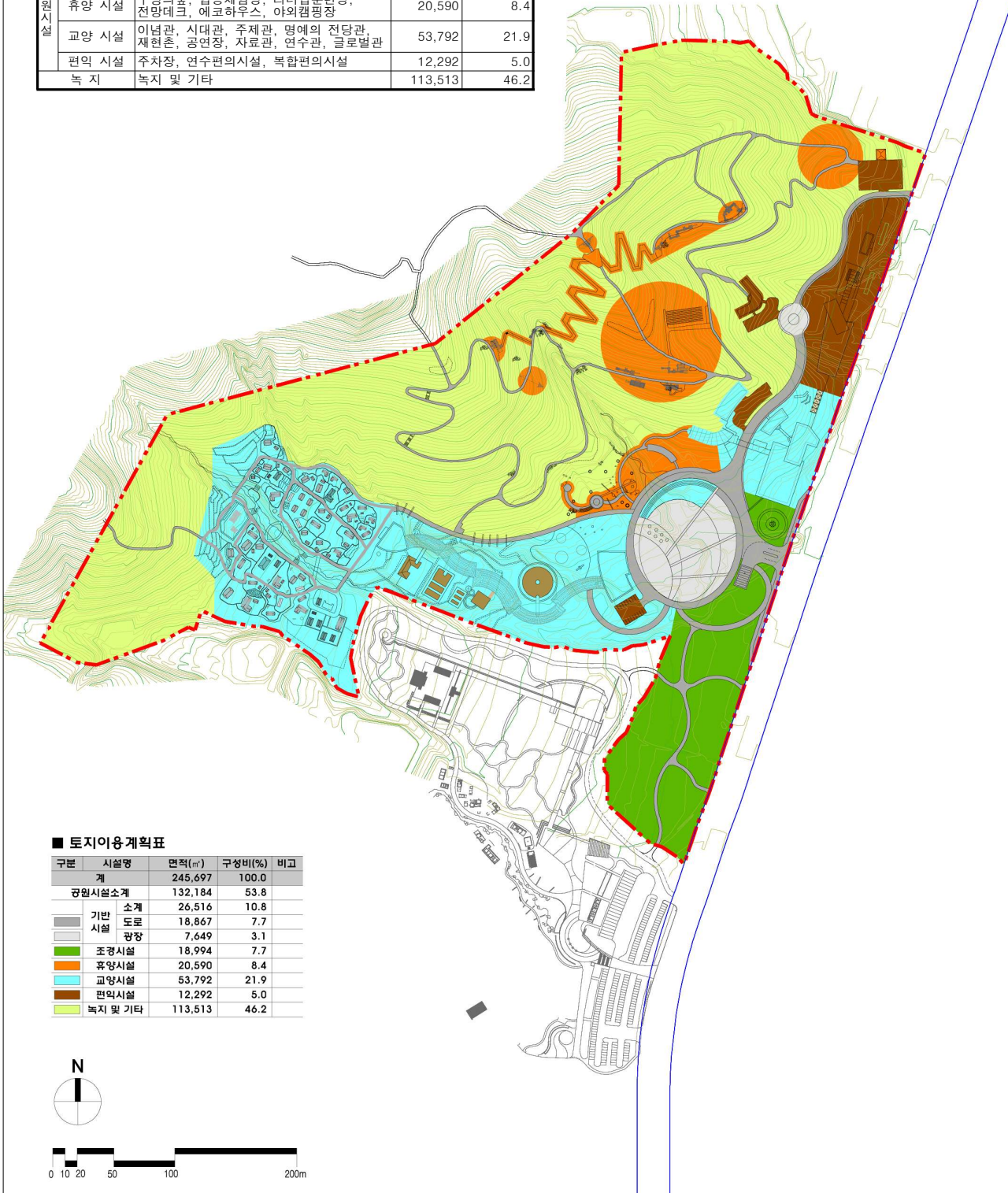
4. 붙임

1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“안”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


2) 토지이용계획도 “안”

시설 구분	시 설 내 용	부 지 규 모	
		면 적(㎡)	구성비(%)
계		245,697	100.0
공원시설 소계		132,184	53.8
공원시설	도로 및 광장	26,516	10.8
	조경 시설	18,994	7.7
	휴양 시설	20,590	8.4
	교양 시설	53,792	21.9
	편익 시설	12,292	5.0
녹 지	녹지 및 기타	113,513	46.2



3) 시설배치계획도 “안”

